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2. 27.

행정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 및 발의자 : 2019. 2. 11.(월), 한경혜 의원 등 10명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9. 2. 18.(화) (의안번호 제88호)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9. 2. 25.(월), 제260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2. 제안요지

가. 제안설명자 : 한경혜 의원

나. 제안이유

장년층 세대가 조기은퇴, 노후불안, 생계문제 등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사회적 참여를 희망하고, 할 수 있는 장년층에 대한 우수한 역량을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 및 일자리 지원 등이 필요하기에 관련 지원 사항을 정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2조 ~ 안 제3조)
- 2)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안 제4조 ~ 안 제5조)
- 3)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4) 지원시설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안 제8조)
- 5) 인생이모작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라.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4조
- 2)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있음
- 3) 합 의 : 어르신아동복지과(인생이모작팀)와 합의되었음
- 4) 입법예고 (2019. 2. 12. ~ 2. 16.), 결과 : 의견 없음

3. 검토의견

가.	조례안의 취지 및 배경
----	--------------

- 서울특별시는 2015년 4월, 장년층의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그 후 50플러스 재단 설립을 위하여 같은 해 10월 8일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의 정책에 맞춰 자치구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50플러스센터를 설립, 장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음. 강동구는 2016년, 강일동에 50플러스센터 건립 계획을 세우고 서울특별시의 지원도 확정되었으나 정책회의 결과 우선순위에 밀려 부지 확보 문제로 사업이 취소되었음
- 장년층은 육체적·정신적으로 일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세대이나 사회적으로 조기퇴직, 사업실패 등의 사유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많음. 본 조례안은 자치구 차원에서 장년층에 대한 우수한 역량을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 및 일자리 지원 등이 필요하기에 관련 지원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10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의 장년층 정의(50세 이상 65세 미만)는 명확히 이 나이대가 장년층이라고 정의할 법적 근거는 없음. 다만,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상 장년층의 정의 기준을 타 자치구에서 조례 제정 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바, 장년층에 대한 통일성 있는 지원 대상 기준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의라고 판단됨
 다만, 동작구와 영등포구는 지원대상이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하는 중년층을 포함한 중·장년층으로 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및 타 자치구에서는 전문성을 가진 재단 등을 설립하여 위탁 운영을 하고 있음. 즉, 안 제8조에 시설의 위탁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추후 시설운영 시 관련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조치근거로 판단됨
- 안 제9조의 위원회 구성 규정은 장년층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문기구로 보임. 다만, 위원회의 운영, 임기 등의 세부사항은 안 제10조에 따라 시행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다. 강동구 장년층 현황

- 2019년 1월 기준, 강동구의 인구는 42만 6,865명임. 이 가운데 안 제2조에 따른 장년층(50세 이상 65세 미만)은 10만 3,496명으로 강동구 인구의 약 24.25%가 지원 대상으로 파악됨

<표 1> 강동구 장년층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인구 수		구성비율	비고
		남자	여자		
강 동 구	426,865	211,381	215,484	100 %	
장 년 층	103,496	50,015	53,481	24.25 %	
50 ~ 59세	70,926	34,554	36,372	16.62 %	
60 ~ 64세	32,570	15,464	17,109	7.63 %	

※ 자료출처 : 강동구청, 자치안전과, 2019년 1월 기준

라.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인생이모작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광진구를 포함한 10개 자치구가 있음

<표 2>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

자치단체	제 명	제정일자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2018.10.26.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2018.04.05.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2018.11.09.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2017.03.16.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2018.12.27.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2015.11.12.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2018.11.15.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2017.09.27.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2017.03.09.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2017.06.01.

- 현재 자치구별로 50플러스센터를 노원구, 종로구, 동작구, 영등포구, 서대문구가 설립하였고, 권역별 50플러스 캠퍼스는 도봉구, 구로구, 마포구, 은평구에 설립되고 광진구와 강남구가 예정 중임

마. 종합 검토의견

- 강동구는 기존 사업 추진이 취소된 적이 있음. 그러나, 금년부터 강동구 조직개편 결과에 따라 인생이모작팀이 신설되어 장년층에 대한 지원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바, 조례안은 사업 추진의 법적근거가 될 것임
-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상황임. 중년층에 대한 지원으로 노년기의 자립생활이 가능하게 되면, 추후 복지예산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킬 수 있고 사회적으로 세대 간 갈등도 완화 시킬 수 있다고 사료됨

-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안 제7조 인생이모작지원 시설의 설치는 법적 근거가 있음. 다만, 조례안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원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므로 관련 예산이 많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서울특별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50플러스캠퍼스 또는 50플러스센터¹⁾로 지원을 받아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 없음

5. 수정안 요지

- 해당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 1. 50플러스캠퍼스 : 장년층의 다양한 욕구에 기반한 상담, 교육, 일, 여가·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광역거점 시설

2. 50플러스센터 : 장년층의 교육·상담, 사회공헌 및 사회참여활동 등의 서비스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지역기반 시설